

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지금 전화하십시오.

기업은 고령자가 갖고 있는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

근로자는 고용불안 없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

## 임금피크제

보다 자세한 내용은 **고용센터** 또는 **고객상담센터**

(국번 없이 1350)에 문의하거나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를 참조하십시오.

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
국번 없이 1350

홈페이지: www.moel.go.kr

고용센터명	전화번호	고용센터명	전화번호
서울고용센터	02-2004-7301	김해고용센터밀양출장센터	055-356-8225
서울서초고용센터	02-580-4900	양산고용센터	055-379-2400
서울강남고용센터	02-3468-4794	진주고용센터	055-753-9090
서울동부고용센터	02-2142-8924	하동고용센터	055-884-8219
서울서부고용센터	02-2077-6000	통영고용센터	055-650-1800
서울남부고용센터	02-2639-2300	거제고용센터	055-730-1919
서울북부고용센터	02-2171-1700	대구고용센터	053-667-6000
서울관악고용센터	02-3282-9200	경산고용센터	053-667-6800
인천고용센터	032-460-4701	대구북부고용센터	053-605-6500
인천북부고용센터	032-512-1919	대구강북고용센터	053-606-8000
부천고용센터	032-320-8900	포항고용센터	054-280-3000
김포고용센터	031-999-0900	포항고용센터울진출장센터	054-783-0841
의정부고용센터	031-828-0812	경주고용센터	054-778-2500
구리고용센터	031-560-5815	구미고용센터	054-440-3300
고양고용센터	031-920-3937	김천고용센터	054-431-2728
수원고용센터	031-231-7864	영주고용센터	054-639-1122
용인고용센터	031-289-2210	문경고용센터	054-556-8219
평택고용센터	031-646-1202	안동고용센터	054-851-8061
평택고용센터안성출장센터	031-671-1921	광주고용센터	062-609-8500
안양고용센터	031-463-0700	전주고용센터	063-270-9100
광명고용센터	02-2680-1500	정읍고용센터	063-532-8216
안산고용센터	031-412-6993	남원고용센터	063-631-1919
시흥고용센터	031-496-1909	익산고용센터	063-840-6500
성남고용센터	031-739-3174	익산고용센터김제출장센터	063-548-1919
성남고용센터이천출장센터	031-632-9898	군산고용센터	063-450-0600
경기광주고용센터	031-769-0168	군산고용센터부안출장센터	063-581-7637
춘천고용센터	033-250-1900	목포고용센터	061-280-0500
강릉고용센터	033-610-1919	순천고용센터	061-720-9114
속초고용센터	033-630-1919	여수고용센터	061-6500-155
원주고용센터	033-769-0900	대전고용센터	042-480-6000
태백고용센터	033-552-8605	공주고용센터	041-851-8501
태백고용센터삼척출장센터	033-573-9911	공주센터논산출장센터	041-731-8600
영월고용센터	033-371-6260	공주센터연기출장센터	041-861-8900
부산고용센터	051-860-1919	청주고용센터	043-230-6700
부산동부고용센터	051-760-7103	옥천고용센터	043-731-7414
부산북부고용센터	051-330-9900	천안고용센터	041-620-7400
창원고용센터	055-239-0900	충주고용센터	043-850-4000
마산고용센터	055-259-1500	제천고용센터	043-652-1919
창원고용센터진해출장센터	055-547-6277	보령고용센터	041-930-6200
울산고용센터	052-228-1919	서산고용센터	041-669-1919
김해고용센터	055-330-6400		

# 임금피크제지원금



“임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 
계속 일하고 싶은 분들을  
도와드립니다.”

50세부터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 
월 5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.



고용노동부  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국번 없이 1350  
www.moel.go.kr

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란 무엇인가요?

[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]는

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

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지원금으로

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### 지원대상

사업주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 
고용을 연장하면서 기준 감액률 이상  
임금 감액하고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

### 지원내용

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신청시점  
임금의 차액을 연 600만원 한도내에서  
50세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
### 신청절차

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 
1월말(매 분기 다음달 말일)까지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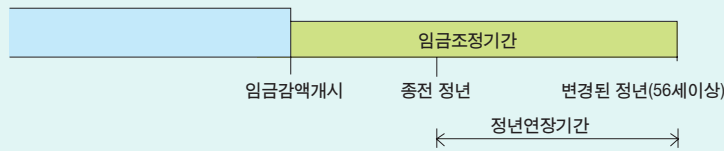
## 1.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요?

-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다음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·실시하여야 합니다.

-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여부가 단체 협약·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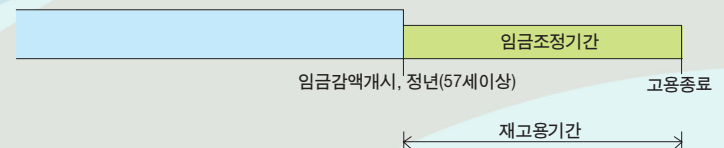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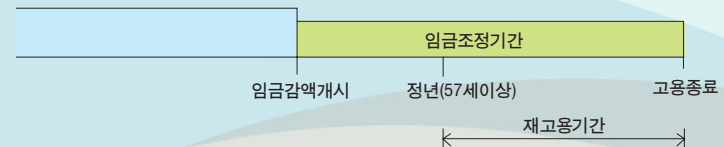
### ① 정년연장형

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정년 전(50세 이후)부터 임금감액



### ② 재고용형

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감액하거나, 정년퇴직자를 3개월 이내 고용하면서 정년 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



### ③ 근로시간 단축형

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,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또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

## 2.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?

- 임금피크제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져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감액후 연간 임금이 5,67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

-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
- 기준감액률 이상 임금이 감액되어야 함
  -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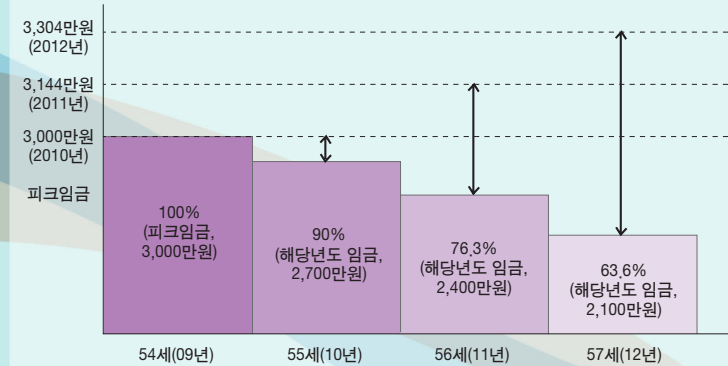
※ 피크임금 :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

※ 기준감액률 : 정년연장형 및 재고용형(정년전 임금감액)은 20%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%), 재고용형(정년이후 임금감액)은 30%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%), 근로시간 단축형은 50%

[연도별 임금 인상률]

구분	'01년	'02년	'03년	'04년	'05년	'06년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년
임금인상률	6.0	6.7	6.4	5.2	4.7	4.8	4.8	4.9	1.7	4.8	5.1

[근로자 A의 임금피크제 적용 현황]



- 근로자 A가 '09년 54세에 피크임금 3,000만원을 받았고 '12년 57세에 연 2,100만원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

- 그간의 임금인상률 9.9%('10년·'11년 임금인상률)를 반영한 3,304만원(3,000만원×104.8%×105.1%)과 신청 연도 임금 2,100만원을 비교

## 3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-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.

-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(비과세소득 제외)기준

### ① 정년연장형

- 피크임금 대비 80%(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%)와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
-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### ② 재고용형

- 정년 전(55세 이후)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 80%(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%)와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
- 정년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 70%(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%)와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
-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### ③ 근로시간단축형

- 피크임금 대비 50%와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
- 최대 10년간(재고용의 경우는 5년간)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

## 4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까지(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) 신청하여야 합니다

- 사업주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

- 『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』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(매 분기 다음달 말일)까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

### ② 신청서류

- 『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』1부
-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(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)
-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서 사본 1부(최초 신청시에만 제출)
- 피크임금과 해당기간 임금을 비교하여 해당기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연단위 신청 시 피크 연도 및 해당 연도의 『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』
- 분기단위 신청 시 피크 연도 『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』 및 해당 분기 『근로소득원천징수부』 각 1부를 제출하되, 해당연도 4분기 또는 마지막 신청 시 해당연도 『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』 1부.

- 고용센터에서는 피크임금과 신청 시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 감액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

-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지원금 신청을 일괄하여 대리신청 가능
  - 신청서를 근로자별로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
